# '프로젝트 지분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에 대한 부속 계약서

기업과 개인 김용운이년 _월 _일에 채결한 '수익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이하 "양도 계약"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이전 계약의 추가적인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양도 계약의 대상이 되는 수익권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다
제3조 (판매량과 금액) 양도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지분은 다음과 같이 가격을 책정하고 그 중 아래와 같은 비율을 양도한다.
총 가격(100%기준):원정 판매비율(100%중 비율 ):% 총 판매 대금 :원정
제5조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 1. 대금지급시기의 경우 경매를 완료했을 시기를 원칙으로 한다. 2. 1차 판매에서 전부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최소가격 인하 후 다시 판매를 진행할지혹은 판매를 포기할 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 2차판매의 진행 방식 (판매 포기/인하판매(%))
제6조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개발기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일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진행 공시 간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일(경매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제6조 (프로젝트 개발 완료 후)

- 프로젝트 개발 완료 후 수익공개 간격 \_\_\_\_\_일

- 제무제표 공시 간격 \_\_\_\_일

## 제7조 (진행이전 공시를 어겼을 경우)

1. 개발기간의 경우

계약상의 일시보다 30일 연기될 때마다 총 투자 금액의 10%에 연기된 횟수가 곱해진 값 더하기 총 투자금액이 위합금으로 책정되고 총 3달 개발을 미룰 수 있다.

게발이 실패할 경우 위합금을 지분해야한다.

2. 개발완료 후의 경우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공시 기간을 1주일 이상 어겼을 경우 경고를 부여하고 총 3번 경고가 누적되면 게임사는 현재 Shift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줘야한다.

###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9조 (계약의 해제)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 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제12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 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기타부속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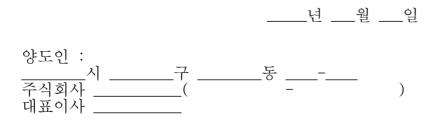
-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양수인: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